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전거 등록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518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성훈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3. 17.
3. 회 부 일 : 2026. 3.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자전거 등록은 강제가 아닌 자율에 맡기고 있어 자전거 등록률은 저조한 실정임. 이에 따라 자전거 절도·도난이 발생할 경우 자전거를 되찾기 쉽지 않아, 자전거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전거의 등록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하는 사람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 22조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하는 사람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자전거의 등록 등) ① · ② (생략) <u><신설></u>	제22조(자전거의 등록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전거의 등록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하는 사람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u>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u>	⑤ <u>제4항</u> ----- -----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이라 함)」은 자전거 분실 및 도난과 방치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전거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자전거 등록제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음.

자전거 등록제는 수기 또는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 자전거 등록을 신청하면 자전거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자전거 등록제 도입 시 자전거 도난방지나 방치 자전거 관리 등 각종 행정업무에 자전거 등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자전거 등록제 운영 현황]

지자체명		시행년도	등록 자전거(대) ¹⁾	등록방식	표시방식	비고
총계	13	-	17,732	-	-	
서울	양천구	2008	3,166	수기, 모바일앱	스티커, 번호판	
	강동구	2014	154	수기	스티커	
인천	연수구	2014	2,242	온라인	스티커	'25.4. 폐지
울산	중구	2012	1,791	수기, 온라인	스티커	
	북구	2023	82	수기	번호판	경찰서 운영
경기	고양	2019	3,430	온라인	스티커	
	부천	2018	6,094	온라인	스티커	
	가평	2024	-	수기	스티커	
충북	제천	2024	5	수기	스티커, 등록증	
충남	당진	2023	13	수기	스티커	
경남	사천	2017	166	수기	등록증	
	함양	2011	214	수기	등록증	
제주	제주	2023	374	수기	스티커	

※ 자료 : 행정안전부

그러나 자전거 등록제의 도입 여부와 자전거의 등록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자전거 소유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2024년 말 기준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3개 시·군·구에 불과하고

1) 행정안전부, 『2025년(2024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 2025.

전체 등록 자전거 대수는 17,732 수준으로 자전거 등록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전거 등록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하는 사람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로, 현재 서울 양천구는 ‘스마트 자전거 지킴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전거 등록시 RFID 칩이 내장된 번호판을 장착하여 도난방지 구역 내 주차감시와 도난 발생시 위치 정보 제공 등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충북 제천시도 자전거 운전 중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제공하는 ‘시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하면서 자전거 등록증을 보유한 시민에 한하여 보험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다만, 자전거 등록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서울 양천구와 충북 제천시의 경우 등록 자전거 수는 각각 3,166대 및 5대로 자전거 등록이 저조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각종 지원에 필요한 비용과 자전거 등록 활성화의 편익을 비교할 필요가 있어 보임.

특히 1995년 법률 제정 당시부터 자전거의 도난·분실을 방지하고 무단방치된 자전거의 주인을 찾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자전거 등록제를 도입해 왔고, 2016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자전거 등록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각종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자전거 등록제의 도입과 등록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고 자전거 등록정보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음.

또한 인천 연수구의 경우 2014년 자전거 등록제를 도입하였으나 자전거 등록 실적이 저조하고 등록 후에 자전거 폐기나 주소 이전에 따른 정보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 외에도 자전거 등록 스티커는 쉽게 제거할 수 있어 도난 방지의 효과가 낮고 등록 자전거에 대한 도난·분실 신고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2025년 자전거 등록제를 폐지하는 등²⁾ 자전거 등록제의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능력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 자전거 이용 환경과 인프라의 격차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자전거 등록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합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350

2) 정선아 기자, “자전거 없어져도 신고 안해… 등록제 11년 만에 폐기”, 경인일보, 2025.06.12., <https://www.kyeongin.com/article/1742869>, 2026.08.11. 최종확인.